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위험물 운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탱커” 및 “탱크선”에 대하여 위험물 반입 신고시 화물적부도 첨부 의무화를 통해 위험물의 적재위치, 적재량, 화물종류 등 화물 적재상태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위험물 일람표에 통과 화물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기재하도록 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신고기준 강화(안 제14조 개정)

- 1) 현행 기준은 정확한 화물 적재위치를 제출하지 않고 통과화물의 경우 위험물 일람표에 대표적인 것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험물의 양과 종류 식별에 시간이 지체되어 울산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와 같은 위험물 관련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음.
- 2) 이에 사고 발생에 취약한 “탱커” 및 “탱크선”을 대상으로 통과화물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위험물 일람표에 기재하도록 하고(별지 제11호서식), 반입 신고 시 기존의 위험물 일람표와 함께 화물적부도를 첨부하도록 하여 화물 적재상태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별지 제11호의2서식)
- 3) 개선된 위험물 일람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사전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화물 적부도를 통해 화재진압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
2.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일람표
3.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화물적부도(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2호에 따른 탱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탱크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2호에 따른 탱커 또는 같은조 제13호에 따른 탱크선이 아닌 선박은 통과화물(선박에 적재된 위험물 중 해당 항구에 내리지 않는 위험물을 말합니다)의 종류가 많아서 모두 적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한 종류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이 경우 “품명” 란에는 ○○ 외 ○종(예: 등유 외 20종)으로, “중량” 란에는 통과화물의 총중량을 각각 적고 그 구체적인 내용(위험물 적하목록 등)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위험물 일람표) 개정안

위험물 일람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업체코드				선명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해당연도-입항횟수				구분 []해상 반입 []육상 반입								
일련 번호	증명서 번호	작업 구분	UN No.	CLASS No.	품명	중량 (M/T)	컨테이너 No.	B/L No.	하역 장소	반입일	송화인	수화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입항횟수”란에는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적은 입항횟수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증명서번호”란에는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적하목록 관리번호(MRN: Manifest Reference No.)를, 수출화물 또는 연안운송화물의 경우에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시증 번호 또는 위험물 운송적합인증서 번호를 적습니다.
- “작업구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합니다.
1. 양하 2. 양하T/S 3. 적하 4. 적하T/S 5. 통과화물 6. 급유 9. 기타
- “품명”란에는 적재화물의 품명을 명확히 적습니다.
(예: 유류의 경우에는 가솔린, 중유, 등유, 원유 등으로 세분하여 적습니다.)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2호에 따른 탱커 또는 같은조 제13호에 따른 탱크선이 아닌 선박은 통과화물(선박에 적재된 위험물 중 해당 항구에 내리지 않는 위험물을 말합니다)의 종류가 많아서 모두 적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한 종류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이 경우 “품명”란에는 ○○ 외 ○종(예: 등유 외 20종)으로, “중량”란에는 통과화물의 총중량을 각각 적고 그 구체적인 내용(위험물 적하목록 등)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적습니다.
- 작업횟수는 해당 항만에서 작업한 횟수를 적습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UN No.”란, “CLASS No.”란, “품명”란 및 “중량(M/T)”란을 작성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화물적부도) 신설안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화물적부도

		탱크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선 수	우현	화물 명칭								
		적재량 (MT)								
	중앙	화물 명칭								
		적재량 (MT)								
	좌현	화물 명칭								
		적재량 (MT)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선박의 구조와 화물의 적재상태에 따라 탱크 위치 변경, 탱크 추가 및 삭제 등 화물적부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화물적부도는 적재화물의 종류, 적재량 및 적재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2. 비어있는 탱크의 경우 화물명칭에 공탱크임을 표시합니다.
- 3. 화물의 종류와 적재량 및 적재위치를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체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자료로 동 서식에 따른 화물적부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험물 반입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u>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하여</u>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육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육상구역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전(前) 출항지부터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이고 해상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위험물 반입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위험물 반입의 신고) ① ----- ----- ----- ----- <u>다음 각 호의 서류를</u> ----- ----- ----- -. ----- ----- ----- ----- ----- ----- ----- --.		
<신 설>		1. <u>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u>		
<신 설>		2. <u>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일람표</u>		
<신 설>		3. <u>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화물 적부도(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2조제12호에 따른 탱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탱크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